

창원지방법원 2024. 12. 13 선고 2024가단3322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1. 15.

판 결 선 고 2024. 1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30㎡를 인도하고,
나. 2024. 3. 19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박규도

별지